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53
----------	------

2025년 9월 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11일, 박철성 의원(찬성자 22명)
-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9월 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철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물순환의 범위를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여 물순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정리 함(안 제2조제4호).
- 2) 물순환 범위를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고자 관련 내용을 추가 함(안 제8조제2항4호, 제9조1항, 제36조 본문, 제36조제1호에서 제3호, 제37조 본문, 제37조제2호, 제37조제4호).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주민대표 추천, 위원장 선출 규정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일부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가. 주민협의회¹⁾ 구성·운영 규정 정비(안 16조, 제18조제2항)

- 안 제16조 중 제1항 및 제2항은 주민협의회 구성 기준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한편, 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 현행 조례가 위원장 선출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주민협의회의 운영 인원과 위원장 선출 절차를 명문화하여 민주성과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표 2]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신설>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1. - 2. (생략)

<신 설>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1.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지방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다만, 주민대표가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

----- 주변영향지역 또는 같은

----- 주민대표 8명 이내

2. -----

----- 이공계 분야 -----

-----(----- 위원장이 -----
-----).

○ 안 제16조제3항은 현행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6조 본문 및 각 호를 안 제16조제3항 및 각 호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 먼저, 안 제16조제3항 본문은 현행 조례 제16조 본문에서 시장이 주민협의회 주민대표를 위촉할 때 해당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토록 했던 사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 이는 안 제16조제3항제1호(종전 제16조제1호)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할 때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어 굳이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다음으로, 안 제16조제3항제1호(종전 제16조제1호)는 주민대표 추

천인 자격을 현행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에서 주변 영향지역²⁾ 거주 세대주까지 확대하는 한편, 주민협의회 위원 10명 중 주민대표의 수가 안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문가 2명을 제외한 8명 이내로 운영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 이 중 주민대표 추천인 자격요건을 주변영향지역 거주 세대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행 조례 제16조제1호에서 주민대표로 추천할 수 있는 자를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로만 한정하고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행정동과 물재생시설의 행정동이 상이할 경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추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됨.

○ 안 제16조제3항제2호는 현행 조례 제16조제2호에서 주민협의회 전문가 추천 요청의 주체를 ‘주민대표’로 규정하던 것을 주민대표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 선출 규정 등이 정비된 바 대표성을 가진 자로 권한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 안 제18조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 주민협의회회의 회의 소집 주체를 ‘위원장’으로만 규정하던 사항에 ‘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6. (생략)

- 이는 물재생시설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 측면에서 주민협의회에 부칠 긴급한 현안 안전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로 이해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

[표 3]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주민협회의의 운영) ① (생략) ② 주민협회의의 회의는 <u>위원장이</u>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④ (생략)	제18조(주민협회의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장이나 위원장이</u> ----- -----. ③·④ (현행과 같음)

나. 편익시설³⁾ 사용료 감면대상 및 산정 체계 정비

(안 제5조의2제3항, 별표 2, 별표 3)

- 안 제5조의2제3항제2호의 신설은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현행 조례 별표 3의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를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조례 본문에도 신설하여 별표 3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한편, 안 별표 3에서의 해당 감면율을 100%로 확대(기존 60%)하려는 것([표 5] 참조)으로,
- 이는 교육·공공 목적을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정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편익시설”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정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말한다.

것으로 이해되어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임.

[표 4]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5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② (생략)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u>별표3</u> 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 ----- <u>별표3</u> 의-----.
1. <u>서울시가</u> 주관하는 행사 (신설)	1. <u>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u> ----- 2. <u>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서</u> <u>주관하는 행사</u> 3. <u>규칙으로 정한 지역의 주민</u>
3. <u>지역주민</u>	4. <u>18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결제자</u>
4. <u>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 차량,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요일제 준수차량</u>	5. -----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한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안 제5조의2제3항제3호는 편익시설 감면대상인 “지역주민”을 “규칙으로 정한 지역의 주민”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실무상, 해석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 할 것임.

- 안 제5조의2제3항제4호는 기존 편익시설 감면대상인 전상·공상 군경 등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확인증명서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⁴⁾”으로 통합·개선('23.6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⁵⁾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반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에 대한 감면기한이 종료(2019.12.31.)됨에 따라 이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여기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자로 감면대상을 일원화하는 것은 상 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감면대상(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외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3호⁶⁾의 관계법령⁷⁾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각 유족, 제대군인(장기복무/중기복무), 보훈보상대상(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이 새로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4) 「국가보훈기본법」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5)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6)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데, 이는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임.

- 안 제5조의2제3항제5호는 편익시설 감면대상 차량 중 안 제5조의2제3항제4호에 맞춰 현행 조례 제5조의2제3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차량을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차량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요일제 준수제가 폐지(2022.12월)됨에 따라 요일제 준수차량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안 별표 2는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에 대해 사용료와 관련하여 전용사용료, 주말할증, 사물함 임대료 등 세부 항목을 삭제하여 요율표의 간소화를 통해 현실화하는 등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표 5] 신·구조문 대비표(안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용료(제5조의2 제1항 관련) □ 체육시설		[별표 2] 사용료(제5조의2 제1항 관련) □ 체육시설		
구	분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테니스장	- 개인사용료(1면 1시간 기준)	테니스장	- 개인사용료(1면 1시간 기준)	5,000 ~ 7,500원
	· 평일 5,000 ~ 7,500원		- 조명사용료(1시간 기준)	5,000 ~ 7,500원
	· 토, 공휴일 6,500 ~ 9,750원			
	- 전용사용료(1면 1일 8시간 기준)			
	· 평일 40,000 ~ 60,000원			
	· 토, 공휴일 52,000 ~ 78,000원			
탁구장	- 조명사용료(1시간 기준)	탁구장	- 1일(1면 2시간 기준)	3,000 ~ 4,500원
	5,000 ~ 7,500원		- 1개월(1일 2시간 기준)	20,000 ~ 30,000원
파크골프장	- 사물함 임대료 4,000 ~ 6,000원/월	파크골프장	- 개인사용료(1회, 2시간 기준)	3,000 ~ 4,500원
			- 물품대여료	1,000 ~ 1,500원
□ 주차시설		□ 주차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주차장	- 1회주차(10분당) 200 ~ 300원	주차장	- 1회주차(10분당) 200 ~ 300원
	- 월정기권(비거주자)		- 월정기권(비거주자)
	· 전일(24시간) 70,000 ~ 105,000원		· 전일(24시간) 70,000 ~ 105,000원
	· 주간(08:00 ~ 19:00) 50,000 ~ 75,000원		· 주간(08:00 ~ 19:00) 50,000 ~ 75,000원
	· 야간(18:00 ~ 익일09:00) 20,000 ~ 30,000원		· 야간(18:00 ~ 익일09:00) 20,000 ~ 30,000원

- 현재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⁸⁾’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으며, 전일 또는 월 단위 예약은 받고 있지 않고 파크골프장의 경우 예약시스템상 실질적으로 2시간 기준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세부 항목(전용사용료, 주말할증, 월사용료 등)을 없애고 현장 운영에 맞추어 기준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를 통해 이용자 측면에서 사용료가 단순화됨에 따라 요금 산정이 명확해지고, 사물함 임대료와 같은 추가 부담이 사라져 실질 이용료 부담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안 별표 3은 안 제5조의2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정비하면서, 당초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서 “증명서나 신분증을 제시한 자”로 변경하는 한편, 일부 항목(안 제5조의2제3항제2호 관련)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이 중 감면대상 증빙과 관련하여 “소지”에서 “제시”로 변경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혜택 적용이 가능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https://yeyak.seoul.go.kr/web/main.do>

[표 6] 신·구조문 대비표(안 별표 3)

현행	개정안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대상</th><th>감면율 (%)</th></tr> </thead> <tbody> <tr> <td>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td><td>100</td></tr> <tr> <td>(신설)</td><td></td></tr> <tr> <td>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td><td>50</td></tr> <tr> <td>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td><td>50</td></tr> <tr> <td>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td><td>50</td></tr> <tr> <td>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td><td>50</td></tr> <tr> <td>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td><td>50</td></tr> <tr> <td>8.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9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신설)</td><td></td></tr> <tr> <td>10.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td><td>60</td></tr> <tr> <td>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td><td>10</td></tr> </tbody> </table>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대상</th><th>감면율 (%)</th></tr> </thead> <tbody> <tr> <td>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td><td>100</td></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신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0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8.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신설)		10.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	10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별표 3]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1. 체육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대상</th><th>감면율 (%)</th></tr> </thead> <tbody> <tr> <td>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td><td>100</td></tr> <tr> <td>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td><td>100</td></tr> <tr> <td>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삭 제)</td><td></td></tr> <tr> <td>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삭 제)</td><td></td></tr> <tr> <td>6.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7.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8.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td><td>50</td></tr> <tr> <td>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td><td>50</td></tr> <tr> <td>(삭 제)</td><td></td></tr> <tr> <td>(삭 제)</td><td></td></tr> </tbody> </table> ※ 비고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6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나. 기타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대상</th><th>감면율 (%)</th></tr> </thead> <tbody> <tr> <td>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td><td>100</td></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삭 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삭 제)		6.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7.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삭 제)		(삭 제)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신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0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8.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신설)																																																																	
10.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가능)	10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100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50																																																																
(삭 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	50																																																																
(삭 제)																																																																	
6.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사람	50																																																																
7. 65세 이상인 사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8. 18세 이하인 사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50																																																																
9.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50																																																																
(삭 제)																																																																	
(삭 제)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차량	100																																																																

- | | | |
|--|--|--|
| | (신설) | |
|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100 | |
|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00 | |
|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 80 | |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80 | |
|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80 | |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80 | |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80 | |
| 9.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 80 | |
| 10.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 50 | |
| 1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 50 | |
| 12.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 30 | |
| | (신설) | |
|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

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차량	100	
3.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제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21조 의2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80	
(삭 제)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삭 제)		
8.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함)	80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동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로서 이를 제시한 차량	50	
(삭 제)		
11. 「서울특별시 병역명단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단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단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20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 ※ 비교: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비교: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로”로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표 7]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차집 관거”라 함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 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 6.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차집관로”라 함은 「하수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차집하여 ----- 관로와 -----. 3. ~ 6. (현행과 같음)

- 「하수도법」 제2조제6호¹⁰⁾에 따르면 ‘하수관로’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하천 등에 이송하기 위해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부속시설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 현행 조례의 “차집 관거”는 과거 행정용어로 현재 법령에서는 “관로”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사료됨.

○ 안 제5조제1항은 본문 중 “주민협의회”를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 15. (생략)

10)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 15. (생략)

[표 8]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물재생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u>주민협의회와</u>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 -- <u>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와</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제7조제2항제2호는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안 제2조제2호의 용어정비와 동일한 취지임.

[표 9]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7조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관리·운영의 대행)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하수처리구역내 <u>차집관거</u>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 7. (생략) ③ (생략)	제7조(관리·운영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u>차집관로</u> ----- ----- 3.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안 별표 1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과거 행정 용어로 현행 「하수도법」 제2조제9호¹¹⁾에서 공공하수처리시

11)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 15. (생략)

설을 법률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의 용어 일치, 시대에 맞는 용어 사용으로 공공기관 명칭을 표준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표 10]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7조2항제2호)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물 재생 시설				물 재생 시설			
시설 별	시설명	기능	위치	시설 별	시설명	기능	위치
중량물 재생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일대	중량물 재생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일대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차집관거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차집관로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중계펌프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중계펌프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탄천물 재생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80일대	탄천물 재생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80일대
	차집관거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차집관로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중계펌프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중계펌프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서남물 재생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1일대	서남물 재생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1일대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차집관거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차집관로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중계펌프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중계펌프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난지물 재생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일대	난지물 재생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일대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리	
	차 집 관 거	하수를 처리장으로수송	
	중 계 펌 프 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수송	

		리	
	차 집 관 로	하수를 처리장으로수송	
	중 계 펌 프 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수송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양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철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5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박철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서상열, 송도호,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상욱,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민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물순환의 범위를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여 물순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정리 함(안 제2조제4호).
- 나. 물순환 범위를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고자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4호, 제9조1항, 제36조 본문, 제36조제1호에서 제3호, 제37조 본문, 제37조제2호, 제37조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 지하수법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를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으로, “눈녹은”을 “눈 녹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출지하수 발생 시 유출지하수의 처리 또는 이용·함양을 위한 계획

제9조제1항 본문 중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를 “제8조제2항의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빗물관리시설”을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빗물관리시설”을 “빗물관리시설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빗물관리”를 각각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으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를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의 중요성을”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을 “빗물관리시설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을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의 중요성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빗물관리”를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u>눈 녹은 물</u>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4.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 ----- ----- <u>눈 녹은</u> ----- -----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생략)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유출지하수 발생 시 유출지하수의 처리 또는 이용·함양을 위한 계획</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u>사업구역내에</u>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 ----- ----- ----- 제8조제2항

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 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36조(연구·개발의 촉진)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 시범설치 및 보급 촉진 사업
2. 빗물관리 교육·홍보자료 개발
3. 그 밖에 빗물관리 촉진 등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3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빗물

의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연구·개발의 촉진) -----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1. 빗물관리시설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

2.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

3. -----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

제37조(홍보 및 교육) ----- 빗물·

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생 략)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빗물관리 홍보에 대한 지원
5. (생 략)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의 중요
성을 ----- 빗물
관리시설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의 설치를 --.

1. (현행과 같음)
2.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
용의 중요성과 -----

3. (현행과 같음)
4. -----
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6조(연구·개발의 촉진) 및 제37조(홍보 및 교육)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에서 2021년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시작으로 유출지하수를 포함한 통합 물순환정책¹⁾을 시행하여 유출지하수 이용 확대를 위한 관련시설 설치 및 홍보 등 민·관협력 사업을 기추진 중에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참고자료로 2040년 물순환회복 기본계획을 첨부함(붙임)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2040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수립(물순환정책과-28529, '22. 8. 18.)

V 추진방향 및 목표

□ 물순환회복 기본방향

○ 빗물의 유출저감을 위한 빗물관리에서 도시 물순환 관리로 확장

-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쾌적성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 보완
- 자연순환과 인공순환이 상호 보완되어 균형적으로 작동하도록 통합 물순환 관리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협의제도 및 정책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도시

목표

통합 물순환관리

자연물순환 확대

물자원 순환이용 증대

관리
전략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물순환 관리

1.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물순환 관리체계 도입
2. 물순환 DB구축 및 지도화
3. 복합기능의 자연형 물순환시설 확대
4. 물순환 중점관리지역 지정
5. 공공-민간 물순환 확산을 위한 협업체계

사업
확대

건전성 강화를 위한
통합 물순환 사업

1.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
2. 통합형 물순환센터 건립
3. 대규모 개발사업 친환경 물순환설계 적용
4. 물순환 기능을 가진 녹색인프라형 도로 조성
5. 소규모 건축물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6. 도시 물자원 활용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1. 국제 컨퍼런스 개최
2. 물순환시민위원회 역할 강화
3. 물순환인증마크 도입

2-4 대규모 개발사업 친환경 물순환설계 적용

- 대규모 개발사업 빗물·물재이용·유출지하수 통합한 물순환설계 적용
 - 대부분 조정설치 단계에서 인공침투시설 위주의 LD를 계획, 체계적 물순환 관리는 미흡
 -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빗물, 중수도, 유출지하수 시설을 연계 체계적 물순환 관리 도모

○ 시행방안

- [적용대상] 대지면적 1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 [적용방안]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보완, 빗물·중수도·유출지하수 계획 통합 관리
- ▶ 물순환시민위원회 자문시, 관련 계획 제출을 의무화, 활용 계획을 통합적으로 검토

< 주요 검토내용 >

- ◆ [빗물유출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 + 물자원의 순환이용 계획] 의 적정성
 - 빗물분담량(5.5mm/hr)을 만족하는 빗물관리시설 계획
 - 빗물 중수도 유출지하수는 시설(부지) 내에서 청소·조경·수경시설·공동시설 관리용수로 순환이용 되도록 계획 하천 인접 지역 개발시 발생된 유출지하수 등은 하천 용수로 이용

추진계획 물순환 계획 반영·검토기준 마련('22년) → 적용 ('23년 ~)

2-5 소규모 건축물 물순환관리를 위한 시설 지원

- 저영향개발이 적용되지 못하는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빗물관리시설 지원
 -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 물순환 개선 효과성이 높은 빗물관리시설로 지원시설 확대
- 시행방안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후 단계별 확대 추진
 - [지원대상] 대지면적 1,000㎡미만 소규모 건축물 (저영향개발 의무대상 외 시설)
 - [지원방법·금액] 신청을 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50~90% 지원(최대 2천 만원)



< 빗물저금통 >



< 유출저감 침투시설 >



< 빗물정원 >



< 투수성 주차장 >

추진계획 지원계획·기준 마련('22년) → 시범사업 추진('23년) → 확산('24년 ~)

3. 물순환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 **물분야 정책공론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 해외 대도시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물관리 정책을 시행
- 메가시티급 도시간 네트워크를 구축, 물분야 교류·협력 구조 마련
 - ▶ 워터서울 2021 참여도시 : LA, 싱가포르, 도쿄, 시카고, 함부르크 등
- 국내·외 석학·정책리더·시민과 함께 물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 논의



<국제 컨퍼런스>



<시민 정책제안 토론회>



<물산업 일자리 박람회>

□ **물순환시민위원회 역할 강화**

- 물순환 정책 활성화를 위해 물순환시민위원회 전문성 및 정책기능 강화
 - 기획분과(배설조직)를 두어 위원회 운영계획 및 논의과제 정리, 체계적인 운영 도모
 - 도시계획 · 건축 · 상하수도 · 하천 등 다분야 전문가의 참여 확대
 - 분과위원회(빗물·물재이용, 지하수를 통한물관리 기조에 부합토록 기능 중심으로 개편 검토)
 - ▶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정책, 계획, 분쟁조정, 시민소통
- 위원들의 정기적인 정책 발제(기고) 추진, 공유·홍보를 위한 온라인채널 구축

□ **물순환 저변확대를 위한 ‘물순환마크’ 도입**

- 건축물, 도로, 공원 등 물순환 설계가 적용된 시설에 ‘물순환마크’ 부여
 - 물순환 설계가 적용된 시설을 발굴하여 물순환마크 부여(평가기준 수립)
 - ‘물순환마크’가 부여된 건축물과 시설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유·홍보